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회칙안 (김해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007
----------	-------

발의연월일 : 2023. 2. 23.

발 의 자 : 김해람 · 김민준 · 김다혜
김민기 · 류은정 · 박남준
배환빈 · 신영찬 · 이다균
장민주 · 홍여진(11인)

제안이유

「인하대학교 중앙학생회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대의원회가 갖고 있던 선거업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이관됨. 또한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투표방식에 관한 변화의 필요성이 재고됨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화·참정권의 보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선거 절차 관련 규정을 새로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존 「선거 시행세칙」은 투표용지를 이용한 현장 투표 방식만을 고려하여 만들어져 전자투표 및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새로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교과과정 혹은 생업에 의해 선거일에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들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와 교외선거 특례법을 시행하고자 함. 이 밖

에도 선거사무에 관련한 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선거 시행세칙 전부개정안을 제안함.

선거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거의 진행이 인하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학생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2. 대의원
3.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4.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부회장
5. 전공 학생회장, 부회장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세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본회 회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회원을 말한다.

제4조(선거사무협조) 본회의 학생자치기구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본회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거참여가 어려운 선거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학생사회 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답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언론심의의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방송·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방송·보도사에 대하여 이유를 적시하여 시정보도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 회원은 누구나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시정보도 권고를 요구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자치기구 임원의 중립의무 등) 선거운동 기간 당시 학생자치구에 소속된 선출직 및 임명직 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선거구 선거관리)

① 선거구 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자치기구 선거를 담당하는 하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선거구 선거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선거구 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1조(선거권)

① 각 대표자 선거의 선거권자는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일 현재 「인하대학교 중앙학생회칙」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본회의 회원은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선거권이 있다.

2. 제1호에 규정된 자 중 학적에 따른 단과대학·독립학부 선거권

자는 각급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및 부회장과 비례 대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3. 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학적에 따른 전공 선거권자는 각급 전공 학생회장 및 부회장과 과대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4. 「동아리연합회 자치회칙」에 따른 동아리연합회원은 동아리연합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일 현재 인하대학교 학칙에 의한 교환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선거권을 주장할 경우에 한하여 선거권자 총수에서 가산한 후 선거권을 가진다.

제12조(피선거권)

① 피선거권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일 현재 선거권자 중 학칙에 의해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이 있다.

2. 선거일 현재 선거권자 중 학칙에 의해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 전공 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이 있다.

3. 선거일 현재 모든 선거권자는 대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유급한 학기와 부분등록한 학기 또한 제1항의 등록 학기에 인정된다.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3조(선거구)

① 선거구는 이 세칙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② 대의원 선거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한다.

1. 과대의원

2. 비례대의원

제14조(총대의원회의 대의원 의석수)

① 총대의원회의 모든 대의원 의석수 합계는 대의원세칙에 의거하여 선거가 시행되는 학기 시작 전 총대의원회에서 공표된 의석수에 의해 정해진다.

②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는 선거 개시 공고 15일 전까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재학생 수를 반영하여 비례 대의원 의석수를 조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학과별 대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할 과대의원의 의석수는 1인으로 한다.

④ 비례대의원은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단위로 선출하며 구체적인 의석수는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인하대학교 대표자 동시선거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5조(선거기간)

① 인하대학교 대표자 동시선거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날로부터 선거일 전(前)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

간은 최소 재·보궐선거는 7일, 동시선거는 14일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운동을 할 수 없다.

제16조(선거일)

① 선거일은 평일 3일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전 30일 전에 실시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선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인하대학교 대표자 보궐선거의 선거일)

① 총학생회장단 또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 또는 전공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하거나 대의원이 궐위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본 세칙에 따른다.

② 보궐선거는 1학기 개강 이후 4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인하대학교 대표자 재선거의 선거일)

① 재선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의 결정이 발생한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4. 이 세칙으로 재선거의 시행이 확정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1학기 개강 이후 4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선거일 또는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인명부

제20조(명부작성)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현재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3조 제1항의 기간까지 수정할 수 있다.

제21조(등록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의 제23조 제1항의 기간까지 인하대학교 재학생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록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후 24시간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에 통

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 이전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② 선거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4조(명부의 재작성)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후보자

제25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 등록서류(이하 “등록서류”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서류에 사진 1매를 덧붙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거 등록 기간은 최소 7일로 한다.

③ 등록서류 중 추천인의 수는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권자 중 총 300명으로 한다.

2.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

권자 중 5% 이상으로 하나, 유효 추천인 수는 150인을 넘을 수 없다.

3. 전공 학생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권자 중 5% 이상으로 하나, 유효 추천인 수는 50인을 넘을 수 없다.

4. 대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권자 중 5% 이상으로 하나, 유효 추천인 수는 20인을 넘을 수 없다.

5. 동아리연합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권자 중 총 100인으로 한다.

④ 본회의 학생자치기구 대표자와 그 임원 중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등록마감일 5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제2항에 규정된 후보자 등록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퇴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등록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서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서류를 접수하여 피선거권과 등록서류를 심사하여 수리하되 수리할 수 없는 경우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서류를 반환한다.

2. 피선거권이 있으나 등록서류의 미비가 있을 때에는 후보자등록 마감 시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26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 ① 선거권자는 같은 선거의 후보자 1인을 1회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 ②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규정을 어긴 선거권자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27조(등록무효)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될 때 또는 등록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고 그 허위사실이 등록여부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즉시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선거운동

제29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② 제1항 2호의 준비행위 중 사퇴문 공고를 제외하고 어떠한 행위도 공연히 적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제30조(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별로 방문하는 경우
2. 투표소로부터 5m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인쇄물, 확산장치, 표찰, 어깨띠,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특정 후보자 또는 특정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1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사전투표일을 제외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32조(선거운동원)

-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원(이하 “운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 3일 전까지 그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 중 그 명단은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된 자의 선거운동 시작 시점은 등록 다음일로부터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원이 되지 못한다.

1. 선거권자가 아닌 자
2. 선거 당해 학기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전공 학생회 대표자 및 임원
3. 선거 당해 학기 대의원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과 운영요원인 자

③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이유로 사퇴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규정된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서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명찰을 패용하여야 하며, 선거운동하지 않을 시 명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선거운동본부의 설치)

① 후보자는 교내에 선거운동본부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전공 학생회장단 및 대의원 후보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거운동본부의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하며 같은 선거에 각 후보자 간 동등한 조건으로 부여하되, 후보자의 수가 많

아 설치 요건 등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부여하지 못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의 유지와 선거운동의 관리를 위하여 선거운동원 중 1인을 선거본부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운동원의 명단 제출 시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적·경력 및 공약사항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첨부한다. 단, 규격과 장소는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협의하여 조정하며 최종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에 따르며 후보자가 재의를 요청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선거벽보는 등록서류에 기재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③ 선거벽보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④ 선거벽보는 각 후보자가 균등하게 인쇄하여 사용한다.

제35조(선거공보물)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진·성명·기호·학적·경력 및 공약사항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공보물의 종류는 대자보, 플랜카드, 인쇄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게시글 및 영상, 소품, 옷이나 모자같은 의류로 하며 그 수량 및 종수는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며 최종 결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단, 후보자가 재의를 요청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선거공보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배부할 선거공보물의 종류별로 3매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선거공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⑤ 제2항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게시글 및 영상의 경우 게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사전 공유해야 하며,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후보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선거공약서)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개시일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선거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현수막)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당 동등하게 현수막을 게시한다.
- ② 후보자는 각 후보자당 동등하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 ③ 현수막에는 사진·성명·기호·학적·경력 및 공약사항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④ 제2항의 현수막의 규격과 작성, 게시방법은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며 최종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단, 후보자가 재의를 요청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8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시간 내에서 홍보를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연설·대담 시작 1시간 전까지 연설·대담 장소 등 제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장장치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합의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39조(공청회)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청회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며 최종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단, 후보자가 재의를 요청한 경우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0조(허위보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선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선전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같은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2조(선거운동 진행 관련 합의문)

①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후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날인한다.

②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의문 작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없다.

③ 합의문 작성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공고된 선거일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후 필요한 경우 합의문은 수정될 수 있다. 단, 합의문을 수정하더라도 선거운동은 정지되지 않으며 변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직전에 작성된 합의문을 따른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된 합의문을 선거권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투표

제43조(투표방법)

- 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한다.
-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투표방법은 현장선거(오프라인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44조(투표소의 설치)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작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선거시작일 3일 전까지 투표소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투표소 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선거 진행에 대한 안내문 외에 어떠한 게시물도 부착되어서는 아니된다.
- ③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표소 안에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문은 게시할 수 있다.
- ④ 기표소 안에는 투표를 위한 기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건도 적재해서는 아니된다.

제45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기호순으로 하며 기호를 정함에 있어서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단, 선거가 경선이 아닐 경우 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① 투표함과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작

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 등과 일련번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 투표 방식에 있어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집계 선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선거를 마감할 때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하여야 한다.

③ 선거의 개시와 마감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④ 투표참관인의 부재로 인하여 투표 개시와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으로 인해 투표개시가 지연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시간만큼 당일 선거일에 연장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사유로는 연장할 수 없다.

제48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49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 ① 투표인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학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검인된 증명서에 한한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택한 투표방식에 따라 투표용지 혹은 인증번호 등을 교부받는다.
- ② 투표인의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재교부할 수 없다.
- ③ 동일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자물쇠를 봉합, 봉인토록 하거나 전자투표기기를 회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에 배치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투표참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단, 투표 진행 중 투표참관인이 부재하더라도 투표는 중지되지 아니한다.
- ② 투표참관인은 후보자가 투표소별로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투표일 2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④ 투표참관인은 선거사무의 간섭 및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제6항의 퇴장을 명받은 자에 한하여 참관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2조(투표소의 출입제한)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및 운영요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및 위원, 운영요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및 위원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54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지정된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③ 전자투표기기를 사용했을 경우 해당 기기를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회수하여 잠금장치가 달린 상자에 넣고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제55조(투표함 등의 송부) 각 투표소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 혹은 전자투표기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제9장 개표

제57조(개표관리)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여 투표장소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③ 개표는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실시하며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함을 선언하고 출석위원 전원과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소별로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 ⑤ 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과 개표참관인은 제6항의 공표 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 집계 결과와 안전의 확정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전자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집계 선거 방식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과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무효투표)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한 것
 6. 기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투표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 ② 유·무효표의 판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 ③ 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무효표가 발생한 경우 투표소에 상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운영요원이 판단하여 무효표로 처리할 수 있다.

제59조(개표참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단, 개표 진행 중 개표참관인이 부재하더라도 개표는 중지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후보자가 2인을 선정하여 투표일 2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투표권이 없는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⑤ 본회 회원은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개표상황을 참관 및 촬영할 수 있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개표를 계속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중단과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장 당선인

제60조(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및 부회장, 전공 학생회장 및 부회장 당선인 결정)

① 당선인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선이 아닌 때에는 그 유효투표 중 찬성이 선거권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징계 횟수와 징계 수위가 가벼운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징계 정도도 같은 시에는 해당 후보자만으로 재선거를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61조(대의원의 당선인 결정)

① 과대의원 당선자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선이 아닌 때에는 그 득표수가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총수의 10% 이상이 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비례대의원 당선자의 결정은 총대의원회에서 지정한 의석수만큼

의 인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부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최소 유효투표수는 10명으로 하며 공동 득표자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징계 횟수와 징계 수위가 가벼운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징계 정도도 같은 시에는 해당 후보자만으로 재선거를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선거에서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 지정된 의석수보다 그 수가 적을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당선인 결정 방식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다.

제62조(당선인의 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인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투표소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63조(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선거연기 및 재투표

제65조(선거의 연기)

-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소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2장 금지

제67조(금지규정)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선

거에 관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①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② 폭력·협박·납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선거공보물, 현수막 등의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홍보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혹은 교외에 부착하는 행위
- 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⑥ 공청회에서 폭력·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공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⑦ 다른 후보자의 운동 시 폭력·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⑧ 학교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⑨ 선거에 관련된 낙서를 하는 행위
- ⑩ 기타 본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제68조(징계)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린다.
 - 1.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문을 위반한 경우 주의 처분
 - 2. 본 세칙을 위반한 경우 경고 처분

- ② 주의 처분 3회 시 경고 처분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③ 개표 종료까지 경고 처분 3회(또는 주의 9회)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징계 처분 및 자격 박탈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해당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장 이의신청

제69조(이의신청)

- ① 투표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투표 결과 공고 또는 당선인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이의신청자와 피신청자는 각각 서면으로 그 내용을 진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에 따른 투표 무효 또는 당선 무효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장 교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70조(교외부재자 신고)

① 인하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14일 전까지 교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선거권자

2. 인하대학교 교환학생 제도에 의해 해외에 체류중인 선거권자

3. 인하대학교 교과과정 중 실습 등에 의해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부터 선거일 마감일까지 교외에 체류중인 선거권자

② 제1항에 따라 교외부재자 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2. 해외에 체류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교과과정에 의해 교외에 체류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전화번호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를 원활하게 접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을시 해당 선거권자에

게 교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교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⑤ 인하대학교 교과과정으로 인해 한 학기 수업의 대부분이 교외에서 이뤄짐이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인정된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의 신고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교외부재자로 인정된다.

1. 의과대학 의학과 본과 3, 4학년 선거권자

제71조(교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해당 선거의 선거일 10일 전까지 확정된 교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교외부재자들에게 교외선거가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거짓으로 교외부재자 신고를 하였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외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제72조(교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교외투표의 선거일은 제16조 1항에서 지정한 선거일과 제47조 1항에서 지정한 투표시간과 동일한 날짜와 시간으로 한다.

② 교외투표는 온라인 선거를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투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교외투표를 위하여 보통·직접·비밀·

평등선거가 최대한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제15장 사전투표

제73조(사전투표)

- ①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 ② 사전투표방법은 제8장에서 결정하는 투표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73조(사전투표의 목적) 평일 열리는 선거일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선거권자들의 참정권 보장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사전투표참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해야 한다.
- ② 투표참관인의 부재로 인하여 투표 개시와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76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작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사전투표시작 3일 전까지 투표소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투표소는 3개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외의 나머지 제반사항은 본 세칙 제44조에 따른다.

제77조(사전투표시간과 요일)

- ① 사전투표는 본 세칙 제16조에서 정한 선거 시작일 바로 직전 토요일로 한다.
- ② 투표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 ③ 이외의 나머지 제반사항은 본 세칙 제16조와 제47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세칙 제13조, 제14조, 제25조 3항 4호, 제61조는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